

일반
논문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

홍성태 _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논문요약

이 연구는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종합보고서를 기초자료의 원천으로 삼아 81건의 의문사 사건에 관한 결정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의문사 사건의 발생시기, 의문사한 자의 연령과 직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했다. 둘째,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재배열해 의문사의 위치성 쟁점을 검토했다. 셋째, 위법한 공권력의 증충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행위자, 기술, 정치적 무책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주요어** : 의문사, 정치적 억압, 민주화운동, 공권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1462).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건설적인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1. 서론

한국의 과거사 목록에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미해결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과거사 한가운데 은폐된 진실과 왜곡된 기억으로 혼탁해진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의문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을 뜻한다. 그러나 과거청산 혹은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의문사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맥락과 결부되어 있다.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인이 조작되거나 은폐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그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저항운동과 독재정권의 폭력적 억압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 혹은 “권위주의 정권하의 억압적 통치 내지는 국가권력과 관련이 있는 죽음”을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의문사’라고 부른다(홍석률 2001, 1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a, 31).

이러한 ‘정치적 의문사’는 2000년 1월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의문사’라는 법적 개념으로 명문화되었다. 특별법에서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위법한 공권력의 억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의문의 죽음만이 의문사로서 법률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담긴 의문사에 대한 법률적 해석들은 의문사의 인정

범위를 일차적으로 민주화운동의 관련성에 한정해 그 관련성이 약하거나 무관한 사건들을 의문사라고 부르기 어렵게 만들었다.¹⁾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의문의 죽음과 국가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제 의문사 진정사건의 결정문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불능과 기각으로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적지 않았다.²⁾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내용은 의문사 진상규명의 역사적 맥락, 활동기구와 성과, 의미와 쟁점, 법적 해석과 적용의 타

-
- 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기 의문사위원회(2003.7~2004.6)는 국가가 “의문사의 개념을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해 사망했다고 의심할 만한 죽음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개입에 의해 의해서 조작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a, 168). 제2기 의문사위원회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모두 재조사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11건의 진정 사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1, 2기 의문사위원회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사건은 총 30건으로 확정되었다.
 -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3c)의 보고서에는 결정문으로 정리된 총 81건의 의문사 진정 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 중 30건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의문사 사건의 37%가량이 민주화운동 관련 성과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대표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비전향좌익수들에 대한 전향 공작과 고문, 가혹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타살 및 자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비전향좌익수의 사상적 양심과 그 존재 자체를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의문사 그 자체에 있다. 그동안 의문사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의문사 그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 국가 차원의 과거청산 프로젝트에서 진상 규명(활동)의 의의와 법적·정치적 쟁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안병욱 2001; 홍석률 2001; 2005; 박연철 2001; 한상희 2001; 김유진 2002; 박래군 2003; 정원옥 2015). 물론 2000년대 초반은 의문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시기였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의 정당성을 확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연이어 제출되고도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는 의문사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의문사 사건 자체에 주목하면서 의문의 죽음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훑어본다. 의문사 연구에서 ‘정치적 억압’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선, 의문사 사건의 발생학적 차원을 고문과 가혹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국가폭력에서 정치적 억압으로 확장함으로써 의문의 죽음에 개입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폭력의 주체, 수단, 결과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억압은 “시민의 자유와 집단 또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침해”를 가리키지만, 의문사에서는 의문의 죽음에 동원된 부정의한 폭력의 과정으로 구체화된다(Regan and Henderson 2002, 120; 홍성태 2021, 6). 따라서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을 살피는 작업은 의문의 죽음에 개입된 폭력성의 구조를 행위자, 억압의 기술, 그리고 결과의 측면

에서 탐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의문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 ‘민주화운동 관련성’보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대표되는 정치적 억압의 구조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하는 하나의 해석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리해 펴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IV권과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2003.7~2004.6)』 II권에 담긴 의문사 진정사건(1971~1997년)에 대한 81건의 결정문을 기초자료로 동원한다. 보고서의 결정문은 의문사 진정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결과의 요지’, ‘사건 진정의 요지’, ‘인정되는 사실관계’, ‘판단’, ‘결론’으로 구성된 사건 보고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의문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의문사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살핀다.

2. 의문사 연구의 자료와 방법

의문사는 죽음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태에서 명명된다. 사체를 직접 대면하는 검시조사관이나 부검의가 사인을 특정한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연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의심스러운 죽음의 원인과 방식을 밝히는 일이 현장조사 결과, 부검 소견, 독극물 검사치,

의료파일 등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적인 작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정치적 의문사의 경우 의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직접 사인과 간접 사인, 내인과 외인, 구조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사이에서 쉽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Timmermans 2006, 3). 더구나 사인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온갖 의혹과 추측들이 의문사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특히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정치적 힘이 작용할 때, 그래서 수사권한 없이 조사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진상규명 활동을 제약할 때, 여기에 관련자들로부터 양심선언이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차단될 때, 그 결과 기록, 진술, 증언, 정황증거가 불충분하고 불투명할 때, 의문사는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의문사를 발생시키고 그 죽음의 사연을 계속해서 규명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적 억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사에서 마주한 수많은 의문스러운 죽음들은 고문 및 가혹행위와 같은 국가폭력의 전형에서부터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부정의한 권력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정치적 억압에 기인한 것들이다. 죽음에 정치적 의혹을 갖게 하고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억압적인 힘의 작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과거사 진상 규명의 차원에서 의문사라는 이름을 떼어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의문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검시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직관이 닿지 않는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역사적으로 살피는 작업까지 포괄한다.

〈그림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예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 정	
사 건	진정 제7호(최종길 사건)
진 정 인	최광준(의문사한 자 최종길의 아들) 외 347명
피진정기관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의문사한 자	최종길(崔鍾吉) 생년월일 1931년 4월 28일생 직업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사망일 1973년 10월 19일(사망 당시 42세)
주 문	1. 의문사한 자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의문사한 자 최종길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한다.
이 유	1. 과거 수사결과의 요지 1)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이라고 함) 수사 5국 2) 중정 감찰실 3) 서울지방검찰청(1988년 10월 6일 내사사건) 2. 이 사건 진정의 요지 3. 인정되는 사실 관계 1) 최종길의 사망 경위 3) 의문사한 자의 사망 이후의 사실관계 4. 판단 1)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 2)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한 사망 여부에 대한 판단 3)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여부에 관한 판단 5. 결론

이 연구는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1, 2차 보고서에 담긴 진정사건 81건(1971~1997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³⁾ 보고서에는 진정사건 81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결정문의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c; 2004b). 결정문은 ‘사건명’, ‘진정인’, ‘피진정기관’, ‘의문사한 자’, ‘주문’, ‘이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유’에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정치적 억압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기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 중 하나로, 1기 의문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고문치사로 밝혀진 최종길 사건의 결정문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⁴⁾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결정문의 내용을 연구자료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리고 사건 검색과 자료 갱신, 내용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문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구조화하였다. 의문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은 원자료인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분석 항목에 따라 도출하

-
- 3) 1기 의문사위원회는 진정 접수된 80건과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한 5건, 총 85건 중 82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진정 접수된 80건 중에는 예비조사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및 국가폭력 피해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된 2건과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1건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한 사건은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1기 의문사위원회가 정리해 펴낸 보고서에는 81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의문사 결정문이 담겼다. 그리고 2기 의문사위원회의 보고서는 1기 위원회에서 조사시킨 부족, 조사권한 미비, 특히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진상규명 불능 또는 기각으로 판정된 44건에 대한 재조사 내용을 보충했다. 이 연구는 1기에서 생산한 81건의 결정문 내용을 바탕으로 2기에서 재조사를 통해 보강한 의문사 44건에 대한 결정문을 분석에 포함한다.
 - 4) 실제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3c, 95-110) 보고서를 확인할 것.

고 재배열하는 일련의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명, 의문사한 자의 직업, 나이, 사건 발생 시기, 사건 장소, 민주화운동 참여 여부와 내용, 위법한 공권력의 가해 유형, 사인, 피진정기관, 주문 결정, 의문사 배경 등을 다루었다.

이렇게 기초자료를 구조화하는 방식은 저항사건분석(protest event analysis)의 연구방법에서 차용했다. 사회운동연구에서 발전한 저항사건분석은 단어를 숫자로 전환하는 정량적 내용분석의 한 형태로서 저항의 발생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Hutter 2014). 사회운동연구자들은 주로 신문기사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해 저항 사건의 빈도, 시기, 지속기간, 이슈, 레퍼토리 등을 정량화함으로써 사회운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지평을 넓혀왔다(Koopmans and Rucht 2002). 이와 유사하게 이 연구는 의문사 사건과 그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을 경험적으로 살피기 위해 결정문의 형태로 생산된 원자료를 저항사건분석의 연구방법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의문사와 정치적 억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의문사 사건의 발생 시기, 의문사한 자의 연령과 직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했다. 둘째,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재배열해 의문사의 위치성 쟁점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 의문사의 의미는 특별법이 정의한 법률적 위치성—“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

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보다 의문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인들의 청원에 담긴 의미와 더 가깝다. 이는 특별법에서 의문사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도 접맥한다. 특별법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문의 죽음은 기각된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만 특별한 역사적 무게나 가치를 더하고 의문사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주조하는 데 의도치 않게 기여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박연철 2001; 정원옥 2015; 최광준 2020).⁵⁾

참고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81건의 의문사 가운데 진정인이 존재하는 76건 중 86%에 해당하는 66건이 유가족에 의해 진정되었다. 그리고 8건은 동료 및 지인, 2건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서 진정하였다. 의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한 수많은 유가족들은 의문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민주화운동이 아닌 국가폭력에서 먼저 찾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잔혹한 폭력성은 우리 사회가 의문사에 서린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달래기는커녕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와 최후의 예우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문사는 정치적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의문의 죽음으로 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5) 이와 관련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한 정원옥(2015)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의문사의 요건으로 정의했던 특별법의 독소 조항이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유가족들 내부에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을 낳아 진상규명운동을 분열시키는 효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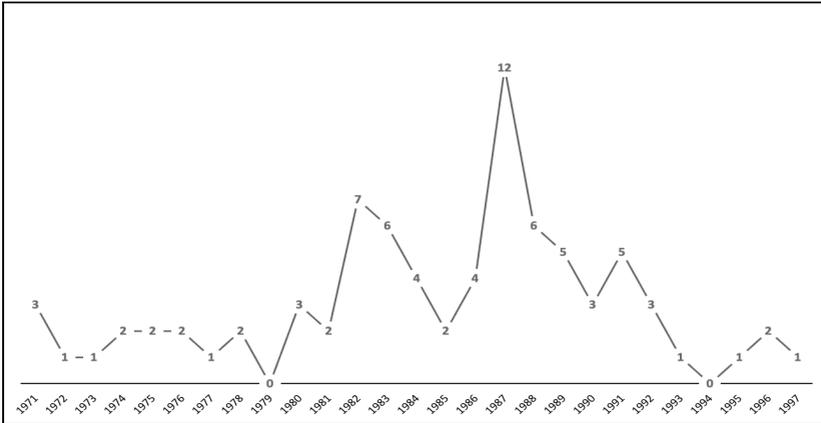
3. 의문사 사건의 특징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억압은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사인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야만적인 부정의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의문사에 개입된 국가권력은 사람들이 죽음에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인을 은폐·조작해 만들어진 사실을 믿도록 강제했다. 그래서 공안통치 기간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 앞에 의문을 강제로 지우려는 정치적 억압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반대편에서 죽음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유족이나 동료 그리고 죽은 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사회적 힘이 남아 있는 한, 의문사는 과거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목과 실재하는 진상규명의 노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재발견되고 재조명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문사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공식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진 의문사 사건은 모든 의문사를 대변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결정문의 형태로 공개된 81건의 의문사 사건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해 살펴본다.

의문사위원회가 조사한 의문사 사건은 1971년부터 1997년까지 두루 걸쳐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문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한 기간으로 전체 의문사 중 절반인 49.3%(40건)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신군부의 노태우 집권기간에 발생한 의문사가 27.1%(22건)이며, 17.2%(14건)이 의문사를 은밀한 정치적 억압의 기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박정희 군부정권기에 발생했다. 박정

〈그림 2〉 의문사 사건 발생 시기(1971~1997) (단위: 건)



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세력의 권위주의의 시대를 지나고도 김영삼 문민정권에서 5건의 의문사가 있었다.

한편, 의문사 사건을 <표 1>과 같이 연령별·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억압의 구조적 맥락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우선, 의문사한 자의 70.3%에 해당하는 57명이 20대 이하로, 그중 절반 이상이 20~24세 사이의 군인과 학생 신분이었다. 이는 한국의 의문사에서 군의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군복무 중 의문사한 24명 중 강제징집된 정성희(1982년, 20세), 김두황(1983년, 23세), 이윤성(1983년, 21세), 한영현(1983년, 21세), 한희철(1983년, 22세), 최운순(1983년, 19세) 등을 포함한 최소 16명이 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한 이력을

〈표 1〉 의문사 사건의 연령별·직업별 분류

연령 (만 나이)	소계	군인	학생	노동자	재소자*	무직자	자영업자, 사업가	정당인, 정치인	공무원	기타**
18~19세	6	2	4							
20~24세	32	22	8	1		1				
25~29세	19	1	5	6	2	3				2
30~34세	3			3						
35~39세	4			3		1				
40~44세	2				1				1	
45~49세	7			1	2		2	1		1
50대	5			1	2				1	1
60세	3				1		1	1		
총계	81명	25 (30.9%)	17 (21.0%)	15 (18.5%)	8 (9.9%)	5 (6.2%)	3 (3.7%)	2 (2.5%)	2 (2.5%)	4 (4.9%)

주 : * 재소자: 비전향 죄익수(3명), 보안감호소(2명), 삼청교육대(1명), 구치소(1명), 교도소(1명)

** 기타: 주부, 연구자, 대학조교, 종교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전두환 정권기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두환 정권은 일상적으로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감시망을 가동했다. 특히 시위현장에서 연행하거나 예비검속을 통해 미리 연행한 ‘불온한 문제 학생’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징집되었다. 이들은 강제로 입영된 후 이른바 ‘녹화사업’의 대상이 돼 강압적인 사상개조뿐만 아니라 휴가 도중 학생운동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임무를 떠맡았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정보는 공안당국으로부터 가공되거나 조작돼 학생운동 조직사건으로 확대되기 일쑤였다. 강제징집이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으로 박정희 정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체계적이

고 광범한 탄압을 목적으로 강제징집된 학생들을 보안사의 녹화사업 대상으로까지 잔혹하게 관리하지는 않았다.⁶⁾ 이처럼 의문사 사건에서 군인과 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과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집합적인 특성을 보인다. 특히 국가권력 안팎에서 정치적 억압을 정면으로 대면해야 했다는 점은 이들이 광폭한 시대의 희생자로서 의문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음을 대변한다.

다음으로 의문사 사건에서 노동자와 재소자의 비중이 각각 18.5%와 9.9%로 군인(30.9%)과 학생(21.0%) 다음으로 많았다. 노동자와 재소자의 의문사는 연령대별로 뚜렷한 특징은 없다. 그러나 발생시기별로 보면, 노동자의 의문사는 주로 1980년대 집중돼 있고, 재소자들 중 비전향 죄익수의 옥사는 1970년대, 보안감호소 및 구치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는 1980년대 초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시대별로 국가권력이 어느 집단을 겨냥해 강도 높은 정치적 억압을 가했는지 잘 보여준다. 결국 의문사를 통해서도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기 공안통치가 자행한 광폭하고 노골적인 국가폭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6) 2002년 의문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녹화사업을 조사했던 박래군(2013)에 따르면, 당시 강제징집자는 1,152명으로, 이들 중 921명이 녹화사업을 강요받았다. 그런데 녹화사업은 강제징집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되어 총 1,192명에 이르렀다. 실제로 1982년 당시 보안사령부 심사과 과장으로 있던 서의남은 의문사위원회 조사에서 “녹화사업 직접 대상자는 1,000여명, 관련자까지 합치면 5,000여 명에 이르렀고” 특히 “88년 이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등은 녹화사업 자체를 토대로 종교, 노동, 학원가에 대해 ‘평화공작’이라는 대규모 좌경운동 색출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이진희 2002).

4. 의문사의 위치성 쟁점

의문사 사건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그 위치성이 다르게 설정된다. 앞서 보았듯이, 특별법에서 의문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전제로 하며 위법한 공권력이 개입된 의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말 그대로의 의문사는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확인하고, 위법한 공권력이 그 죽음의 원인과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의문의 죽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사인으로서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동시에 내포할 때 의문사는 ‘정치적 타살’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가 증거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부재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은 <그림 3>에 서처럼 정치적 타살로 인정되지 않는다(5건). 여기에 해당하는 의문사 중에는 학생운동 이력과 정치적 억압의 증거는 있지만 군에서 자발적 프락치로 변절해 기각된 사례, 민주화운동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모호해 기각되거나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은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확인되나 위법한 공권력과 죽음의 인과성을 밝힐 수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논쟁적인 범주가 있다(13건). 이 가운데 3건은 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죽음은 아니지만, 학교나 회사로부터의 사적 폭력을 공권력이 용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 공권력의 간접적 행사’에 의한 정치적 타살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사주를 받은 직장동료에 의해 폭행당한 후 사망한 사건(문용섭,

〈그림 3〉 의문사 진상조사 결과의 판단기준과 적용*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불인정/판단불가
위법한 공권력	인정	49건 (각하: 2건, 불능: 20건, 인정: 27건)	5건 (기각: 4건, 불능: 1건)
	불인정/ 판단불가/ 부분인정	13건 (기각: 7건, 불능: 3건, 인정: 3건)	14건 (모두 기각)

주: * 의문사특별법에서 '각하'는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각'은 "사실이 아닌 경우",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다. '진상규명 불능'은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인정'은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988년, 47세), 쟁의과정에서 구사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음독자살한 사건(오범근, 1988년, 37세), 학생시위 도중 학생과장과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신사고 사건(박동학, 1996년, 23세)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인정받은 의문사 사건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주화운동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수의 반대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의문

사위원회는 이들 사건이 “국가권력의 억압 행위에 편승하여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한 학원재단·언론사·기업 등에 의한 사적인 억압에 대한 항거”라는 점에 주목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a, 34).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정치적 타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3>에서 의문사 사건 49건에 대한 엇갈린 판정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각하된 2건은 1기 의문사위원회 조사결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으로 남았지만, 2기 의문사위원회 재조사 결과 ‘각하’로 변경된 사례이다.⁷⁾ 그리고 최종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20건의 의문사도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여전히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온전한 정치적 타살로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정치인 장준하(1975년, 60세), 군인 최은순(1983년, 19세), 김두황(1983년, 22세) 그리고 타살이라는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정치적 억압에 여전히 의문사로 남게 된 허원근(1984년, 21세)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의문사가 정치적 타살로 인정된 사건은 총 30건으로, 전체 진정 사건 중 37%가 진실 규명을 통해 죽음의 진상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치적 억압이 의문의 죽음에 어떻게 개입되었는지 그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진상규명 불능사건이 24건으로, 의문사 개념의 본질에 가까운 의문만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정치적 타살의 흔적과 가능성이 발견

7) 이 두 사건은 각각 대학생(1985년, 23세), 군인 카투사(1987년, 23세)가 의문사한 사건으로, 각하된 이유는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b, 176, 317).

〈표 2〉 의문사 진상조사 결정 내용

사건 발생시기	사건 수	인정	진상규명 불능	기각	각하
1971	3	1	1	1	
1972	1			1	
1973	1	1			
1974	2	2			
1975	2	1	1		
1976	2	2			
1977	1			1	
1978	2	1		1	
1979	-				
1980	3	3			
1981	2	1	1		
1982	7	1	3	3	
1983	6	4	2		
1984	4	1	3		
1985	2			1	1
1986	4	1	1	2	
1987	12	4	2	5	1
1988	6	2	1	3	
1989	5	1	3	1	
1990	3	1	1	1	
1991	5		2	3	
1992	3		2	1	
1993	1		1		
1994	-				
1995	1	1			
1996	2	1		1	
1997	1	1			
합계	81(100%)	30(37.0%)	24(29.6%)	25(30.9%)	2(2.5%)

〈표 3〉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따른 의문사 진상조사 결정 내용

구분	사건 수	인정	진상규명 불능	기각	각하
학생운동	25	9	10	4	2
노동운동	10	5	4	1	
민주화운동	17	10	6	1	
민주화운동 관련*	11	6	3	2	
무관	18	-	1	17	
합계	81	30	24	25	2

주: * 통상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기 모호한 재소자 권리운동(1건), 비전향좌익수들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투쟁(3건), 삼청교육대 간호생의 집단시위(1건), 남민전 활동 연관(1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정황증거만 존재하는 경우(5건)를 포함한다.

되지 않거나 의문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건이 총 27건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의문사 진상조사의 결정 내용을 〈표 3〉에서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해 보면, 정치적 타살로 인정된 사건들 가운데 사회경제적 정체성에 따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주화운동 경험자들의 의문사가 10건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유신반대운동, 1980년대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등을 주장한 보안감호소 수용자들의 인권운동, 정치적 의사를 억압한 군 부재자투표의 불법성에 대한 저항, 1990년대 장애인노점상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운동 경험자들의 의문사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건이 정치적 타살로 인정된 사건보다 많은 경우에 속하는데, 이는 학생운동 이후 군

의문사를 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과 접맥한다. 실제로 학생운동으로 분류된 의문사 25건 중 48%에 해당하는 12건이 군의문사이며, 이 중 6건이 인정, 5건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았다. 군의문사는 주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며, 이는 군내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인에 관해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게 한다(윤민재 2014, 116). 이런 점에서 수사권한이 빠진 조사기능만으로 군의문사에 관한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특히 국가폭력의 도구적 원천으로 작용하며,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장 오래 기생하고 존속한, 민주화가 가장 더디게 진행된, 그래서 의문사 사건에 가장 많이 개입하고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가장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군대를 상대로 한 진상규명이 그렇다.

다른 한편, 의문사에는 ‘고문 및 가혹행위’와 같은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흔적이 깊이 자리한다.⁸⁾ 먼저 사인별로 의문사를 분류해보면, 전체 81건 중에서 자살이 2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고사가 22건(27.1%), 타살 17건(20.9%), 병사가 7건(8.6%)으로 나타났으며, 실종 및 규명되지 않은 사인이 8건(9.8%)에 이른다. 타살의 경우 고문과 가혹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8) 의문사 사건 직후 수사기관이 결론지은 사망원인별 현황은 겉으로 드러난 사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총기사(11건), 추락사(10건), 의사(10건), 옥사(9건), 음독사(5건)가 가장 많으며, 그밖에 실종사(5건), 폭행치사(4건), 교통사고(4건), 익사(4건), 소사(3건), 뇌손상후유증사(2건), 뇌출혈, 역사병, 질식사, 동맥파열, 자연사 등 다양한 사망원인이 의문사의 결면으로 나타났다(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2003a, 142).

〈표 4〉 사인별 '고문 및 가혹행위' 발생 건수

구분	자살	타살	사고사	병사	미규명
발생 건수	27*	17	22	7	8
고문 및 가혹행위	12 (44.4%)	17 (100%)	2 (9.1%)	-	-

주: * 총기 자살 9건 포함

의문사에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드러난 자살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죽음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처벌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표면적인 간접사인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타살을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누군가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폭력과 오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적 억압은 여러 의문사 사건들을 죽음의 진실 앞에 멈춰 세웠다. 이는 의문사에 관한 진상조사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인정, 진상규명 불능, 기각으로 분할된 의문사 사건의 위치성을 규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5. 의문사에 담긴 정치적 억압의 행위자와 기술

이제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행위자의 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별 사건들에 나타난 피진정기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인의 관점에서 피진정기관은 의문사

〈표 5〉 의문사 사건의 피진정기관

구분	A	B	C	D	E	F	G
피진정기관	정부 (국방부, 검찰)	정보기관 (국정원, 안기부, 중정)	군대 (육본, 보안사, 기무사 등)	경찰	구금시설	민간 (학교, 회사)	불특정
	28	14	30	21	6	2	19
A	3						
A+B+D				2			
A+C			17				
A+C+D				3			
A+D				3			
B		8					
B+C+D				1			
B+D				2			
B+E					1		
C			7				
C+D				2			
D				6			
D+F						2	
E					5		

에 직접 개입하거나 연루된 정치적 억압의 행위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5〉는 81건의 의문사 사건에 적시된 피진정기관을 억압적 국가기구의 성격과 단위 수준을 고려해 범주화한 것이다.⁹⁾

9) 결정문에 담긴 피진정기관의 단위 수준은 일정하지 않았다. 특히 의문사 사건에 따라 피진정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다수였고, 기관에 속한 특정 개인이나 하부조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지목된 경우, 반대로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가 불

우선, 의문사 사건에서 가장 빈도 높게 출현한 피진정기관은 군대다. 이는 전체 의문사 사건에서 균의문사 비중이 30.9%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군대와 관련한 의문사는 <표 5>에서처럼, 군대(C: 7건)뿐만 아니라 정부(A+C: 17건), 정부와 경찰(A+C+D: 3건), 정보기관과 경찰(B+C+D: 1건, C+D: 2건) 등 다양한 억압기구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그 결과 정치적 억압의 행위자로서 군대가 개입된 의문사 사건은 30건에 달했다.

군대와 함께 공안통치를 위한 억압적 국가기구의 핵심으로 기능했던 정보기관과 경찰도 의문사 사건에 밀접히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독자적인 억압행위(D: 6건)뿐만 아니라 학교와 민간회사(D+F: 2건)에서 발생한 의문사에도 사적 폭력을 용인하고 방조했다는 측면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간접적 행사라는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정보기관도 독자적인 억압행위(B: 8건) 외에 경찰(B+D: 2건)과 교정시설(B+E: 1건)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개입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경우, 청송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보안감호소 등 구체적인 기관 및 관련자들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기관을 적시하지 않은 19건의 의문사가 있는데, 이들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보다는 사찰 및 내사, 감시 및 미행과 같은 비가시적 억압에 노출되었거나 실종사와 같이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의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규칙하게 섞여 있어 억압적 국가기구로서의 성격과 일정한 단위 기준에 맞춰 재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표 6〉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다양성

구분	A	B	C	D	E	F	G
정치적 억압의 기술	사찰, 내사	감시, 미행	공작	강제 연행 및 구금	강제징집	구타 및 가혹행위	프락치 강요
	35	31	9	12	5	32	6
A	5						
A+B		7					
A+B+D				2			
A+B+F						5	
A+B+G							2
A+B+C+D				1			
A+B+C+F						3	
A+B+D+F						2	
A+B+E+G							2
A+B+E+F+G							1
A+B+F+G							1
A+C			1				
A+D+F						1	
A+F						2	
B+C+F						2	
B+C+D+E+F						1	
B+E+F						1	
B+F						1	
C+D				1			
D				2			
D+F						2	
F						10	

다음으로, 의문사에 담긴 정치적 억압의 기술을 살펴보자. <표 6>은 전체 의문사 사건 가운데 정치적 억압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55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정치적 억압은 가시적·직접적 폭력의 전형으로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수반하지만,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무엇보다 제도화된 불법의 방식으로 ‘사찰 및 내사’, ‘감시와 미행’, ‘공작’, ‘강제 연행 및 구금’, ‘강제징집’과 같은 비가시적·간접적·제도적 폭력의 기술을 동원한다. 의문사 사건에서 이러한 억압의 기술은 단수로 존재하기보다 다층적인 결합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다양한 억압의 기술이 의문사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었으며, 사건별로 누적된 억압의 임계점에서 구체적인 사인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억압의 흔적이 발견된 의문사 가운데 63.6%(35건)가 ‘사찰 및 내사’와 같은 은밀한 억압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실제로 ‘감시와 미행’이 추가된 사건(A+B: 7건), ‘강제 연행 및 구금’으로 이어진 사건(A+B+D: 2건), ‘구타 및 가혹행위’까지 포함한 사건(A+B+F: 5건), ‘프락치 강요’로 귀결된 사건(A+B+G: 2건) 등 여러 의문사에서 나타난 정치적 억압의 기초가 ‘사찰 및 내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의문사에 동원된 억압의 기술은 단일성을 가지기보다 다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단일한 억압의 기술이 동원된 17건의 의문사가 있다. 예를 들어, ‘사찰과 내사’ 이외에 추가된 억압을 발견할 수 없는 사건(A: 5건), ‘강제 연행 및 구금’ 상태에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한 사건(D: 2건), ‘구타 및 가혹행위’ 만이 입증된 사건(F: 10건)이 억압의 단일성에

속하는 사례이다.

그런데 억압의 다양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문사 사건은 결과적으로 진상 규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유형에 속하는 5건의 의문사는 자살(3건), 추락(1건), 열차충돌(1건)이 표면적인 사인으로 밝혀져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D유형의 2건 중 한 건도 자살을 사인으로 한 진상규명 불능 사건으로 남았으며, F유형의 10건 가운데 3건 만이 재조사를 통해 기존의 기각(1건)과 진상규명 불능(2건)에서 정치적 타살로 인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조차도 사인에 대해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적인 행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며 인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개진되었다. 어떤 억압의 기술들이 죽음에 동원되었는지에 따라 의문사의 판단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정치적 억압의 무책임성

진실 규명이 절실한 과거사가 현재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감출 수 없다. 역사적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화해라는 명분에 밀려나는 듯하다. 진실 없이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화해의 이데올로기가 마치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흘러가는 과거사를 붙잡아 정리하려는 사회적 힘보다 서둘러 덮어버리고자 하는 정치적 힘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사법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과거의 권력에 갇힌 진실을 해방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에 청

산해야 할 과거가 현실이자 실존 그 자체로 몸의 감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잊히고 사라져간다. 과거사를 둘러싼 진실 규명의 의미가 퇴색하거나 증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잊혀가는 의문사 사건들에 주목해 의문의 죽음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의문사 사건이 내포하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치적 억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의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정치적 억압의 행위자이며, 두 번째 차원은 그 행위(자)가 구현되는 방식으로서 억압의 기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정치적 억압의 무책임성이다. 정치적 억압의 행위자와 기술이 당대 의문사 사건을 주조한 핵심 요소라면, 무책임성은 죽음의 원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되는 위법한 권력의 개입정황과 맥락성을 교묘히 은폐·왜곡하고 사인을 단순한 개인사 문제나 개인의 비운으로 환원함으로써 공권력의 책임을 회피하려했던 공안통치의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공안통치의 누습적인 관행은 민주화 이후 이행기 정의의 정치적 난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억압의 무책임성은 공안통치 권력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엮인 ‘침묵하는 자들’의 공동정범 시스템으로 그 계보를 이었고, 이를 통해 ‘의문사한 자들’에 관한 진실 규명을 집단적으로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의 세 가지 구성적 차원이 의문사의 발생과 진상규명의 지체, 그리고 무엇보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애도를 금기시하는 부정한 권력의 과정을 구조화했다.

의문사를 대하는 공권력의 일관된 무책임성은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

고 무력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억압으로 작용했다. 의문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은 국가범죄의 적극적 가해자로서, 공권력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앗아간 책임이 크다. 또한 이행기 정의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반성과 해명의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시민사회의 의문사진상규명운동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에서도 국가기관은 방관자이자 방해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청산을 지체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무책임성과 모순은 의문사에 담긴 정치적 억압의 진실을 감추고 침묵하도록 길들였던 당대의 부정의 시스템(injustice system)과 연계해 진상규명 활동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시켰다.

이와 같은 무책임성은 의문사 진상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기관별 비협조(협조 현황)’에 비추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a, 146-154).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부 및 검찰청, 경찰청은 의문사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부분을 ‘보안상 협조 불가’, ‘관련자료 없음’, ‘확인할 수 없음’, ‘공개할 수 없음’, ‘실지조사 거부’, ‘답변 없음’, ‘사유 및 근거 소명 후 일부 자료만 열람 가능’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와 같은 정보기관의 고의적인 비협조가 두드러졌다. 정보기관의 비협조는 수사권 없는 조사활동에 의존해야 했던 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폭력을 포함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로 의심되는 기관이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공적 의무에 해당한다(Ahn 2019, 29).

하지만 의문사에 개입된 국가기관들은 기존의 증거마저 의도적으로 인멸했다는 또 다른 혐의를 자초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같은 국가기관의 무책임성은 의문사 진실 규명의 가능성과 활동의 범위를 제약하는 부정의한 힘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억압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은 의문사한 자에 그치지 않았다. 의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할수록 억압의 대상은 유족들로 전화되고, 그 폭력성의 범위와 강도도 커져갔다. 의문사한 자의 유족들이 겪은 피해는 단지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협박이나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는 식의 회유에서 그치지 않았다.¹⁰⁾ 그것은 실존적 삶을 뿌리째 박탈당하는 고통을 낳기도 했다. 유족들은 의문사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의와 타의에 의해 생업을 포기하면서 곤궁과 위협마저 짊어져야 했다. 또한 상실감과 죄책감, 불안과 공포, 절망과 원망 속에서 결국 병까지 얻어 사망하기도 했다(김보택 외 2002).

의문사 유가족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었다. 의문사에 담긴 정치적 억압의 흔적은 국가범죄로부터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과 진실 규명 없이는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10) 이는 1984년 육군범죄수사단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유족 허영춘 씨가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노골적인 협박과 의문사한 이덕인의 유족이 인천 시장으로부터 들은 회유 사례에 해당한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b, 349; 김보택 외 2002, 18).

움직임조차 온갖 억압의 기술을 동원해 서둘러 덮으려 했던 가해자들은 여전히 거대한 공안권력의 우산 아래 진실 규명 없이 화해와 용서로 포장된 망각의 정치를 선동하며 현재를 누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어두운 그늘에 방치된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은 과거사가 아닌 미래사를 위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

참고문헌

- 김보덕·심주형·최윤정·이수연. 2002. “의문사 유족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김유진. 2002. “민주주의 이행기 과거청산운동의 동학: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을 중심으로.” 조희연 엮음.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2)』. 서울: 함께읽는책. 483-541.
- 박래군. 2003.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의 한계와 전망: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 『민주법학』. 24. 63-92.
- _____. 2013. “녹화사업을 아시나요?” 『한겨레21』. 978.
- 박연철. 2001.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법과 사회』. 21. 65-81.
- 안병욱. 2001. “의문사와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의.” 『역사와 현실』. 39. 1-21.
- 윤민재. 2014. “민주화과정에서의 군의문사와 군대폭력.” 『경제와사회』. 104. 112-141.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a.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I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_____. 2003b.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III권』. 서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_____. 2003c.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IV권』. 서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_____. 2004a.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2003.7~2004.6):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I권』. 서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_____. 2004b.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2003.7~2004.6):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II권』. 서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이진희. 2002. “前 보안사 과장, 의문사조사직후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한국일보』, 2002/08/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208270093201303>. (최종검색일: 2022.03.23.)
- 정원욱. 2015. “의문사의 진실 규명에서 민주화 관련성 요건의 기능과 효과: '애도의 정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5(3). 351-384.
- 최광준. 2020. “과거청산의 어제와 오늘: 제2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慶熙法學』, 55(4). 223-288.
- 한상희. 2001. “과거청산을 위한 위원회조직의 기능성 및 한계.” 『법과 사회』, 21. 85-110.
- 홍석률. 2001. “의문사 발생의 역사와 배경.” 『법과 사회』, 21. 17-37.
- _____. 2005. “의문사 진상규명: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시도와 쟁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8. 103-287.
- 홍성태. 2021. “정치적 억압의 전략과 법치주의.” 『한국사회학』, 55(2). 1-28.
- Ahn, Byung-ook. 2019. “The Advancement of Truth Commissions on Past Affairs Along with Democratization in Korea: My Experiences as a Commissioner in Three Different Truth Commissions.” in Véronique Tadjo ed. *The Culture of Dissenting Memory: Truth Commissions in the Global South*. Abingdon, Oxon: Routledge. 26-40.
- Hutter, Swen. 2014. “Protest Event Analysis and Its Offspring.” in Donatella della Porta ed. *Methodological Practices in Social Movement Resea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35-367.
- Koopmans, Ruud and Dieter Rucht. 2002. “Protest Event Analysis.” in Bert Klandermans and Suzanne Staggenborg eds. *Method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31-259.

Regan, Patrick M. and Errol A. Henderson. 2002. "Democracy, Threats and Political Repression in Developing Countries: Are Democracies Internally Less Violent?" *Third World Quarterly*. 23(1). 119-136.

Timmermans, Stefan. 2006. *Postmortem: How Medical Examiners Explain Suspicious Death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0.1.15. 제정, 2009.4.1. 폐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2000.7.10. 제정, 2009.6.2. 폐지)

Political Repression as Reflected in Suspicious Deaths

Hong, Sung-Tai

Lecture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tructure of political repression reflected in suspicious deaths that had occurred in Korea for almost 30 years. Eighty-one (81) final decisions made on suspicious deaths contained in the comprehensive report published by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were analyzed and reconstructed in terms of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uspicious deaths, such as the period in which the deaths occurred and the victims' ages and occupations, were identified. Second, the suspicious deaths were reorganized with a focus on their relevanc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how the final decisions position those deaths. Finally, the structure of political repression reflected in suspicious death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actors of political repression, the methods they used, and their political ir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multilayeredness and diversity of the powers illegally exerted by public authorities.

■ **Keywords:** Suspicious Deaths, Political Repression, Democratization Movement, Public Authority,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투고: 2022.3.31. 심사: 2022.4.26. 확정: 2022.5.12.